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산림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15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일부 완화하고, 나무병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 (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)

-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

나. 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 (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)

- 인력기준의 ‘상시 근무하는 사람’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,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

다.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 (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)

-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,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,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3월 ~ 4월중)

3) 행정규제 :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10의 제목 “(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)”을 “(나무병원의 등록취소·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21조의10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의10제1항 및 제6항”으로, “영업정지”를 “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⑥ 시·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
3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

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⑧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⑨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(擔保保全)에 필요한 시·도지사의

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2. 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별표 1 제6호 중 “4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6 비고 제1호 중 “상시 근무하는”을 “나무병원에 상시 근무하면서
수목진료 업무를 전담하는”으로, “정지된”을 “정지된 사람과 다른 법
령에 따라 등록, 신고,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
고 등이 되어 있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7의 제목 중 “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
(제12조의10 관련)”을 “나무병원 등록취소·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
과 세부기준 (제12조의10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7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과징금의 부과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

- 1)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영업정지 기간은 제2호에서 정한 기간(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
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3)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나무병원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
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$$\text{과징금 부과금액} = \text{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} \times \text{업무정지 일수} \times 0.14$$

- 4)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나무병
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
눈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
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

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(90일을 말한다)별,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.

5)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)

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10(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)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<u>영업정지</u> 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. <u><신 설></u>	제12조의10(나무병원의 등록취소 ·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기준) ① 법 제21조의10제1항 및 제6항----- <u>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-----</u> .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,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⑥ 시·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<신 설>

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
2.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
3.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

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⑧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

<신 설>

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⑨ 시·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(擔保保全)에 필요한 시·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2. 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76